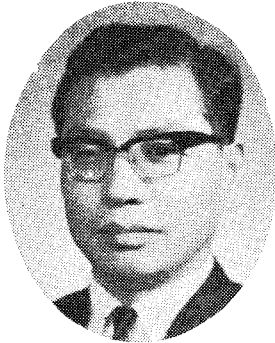


獨
占
規
制
法
은
必
要
한
가



全國經濟人聯合會
專務理事 金 立 三

금번 經濟企劃院은 所謂 獨占規制法 試案을 公表함으로써 一時 잠잠하였던 一連의 價格論爭에 再次 불씨를 던지었다.

全文 29條 附則으로 되어있는 同試案을 一瞥 하고나서 遺憾스러우나 公正去來法制定을 學論 할 때와 같은 結論에 到達하였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數參年前 公正去來法 制定에 對한 論議가 紛紛하였을 때에도 그 法이 너무나 理想에 치우쳐 實際로 執行될 現實與件을 疎忽히 하였으므로 實効性은 且置하고 屋上屋으로 副作用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反對意見이 支配的이어서 同法案이 아직 國會에 繫留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經濟建設에 總力を 傾注하여 온 結果 지난 1968年度의 經濟成長率은 13.1%(暫定推計)에 이르렀고 1人當國民所得도 164 弗을 記錄하여 그當時와 比較하면 顯著的한 量的成長을 誇示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인 經濟成長이 바로 先進諸國과 對等한 經濟水準에 到達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點을 勘案할 때 果然 지금 獨占規制法을 制定하지 않으면 안될 經濟與件에 處하여 있는 時期인가, 또한 이러한 經濟現實속에서 當局이 期待하고 있는 立法趣旨의 具現이 同法試案과 같은 立法規制로서 可能할 것인가에 對하여는 많은 疑問點을 提起키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處하여있는 經濟의 現實與件은 어떠한가 왜 獨占規制立法의 必要性에 對하여 疑問視하는가에 關한 몇가지 理由를 살펴 보기로 한다.

所謂 獨占價格問題 뿐만 아니라 近者學論되고 있는 一連의 價格論爭은 根本的으로 韓國經濟의 發展段階가 아직도 幼稚段階에 있으므로 因하여 市場與件이 不合理하고 物量需給이 均衡을 이루지 못하여 惹起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論爭이 緣由된 國內經濟與件

을 깊이 省察한 後에 同法制定의 必要性을 再考해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면 韓國經濟의 現實與件은 어떠한가.

于先 經濟의 規模가 國際水準에 比하여 小規模이다. 앞에서 지난해의 우리나라 經濟成長이 놀라울 만큼 高度成長을 達成했고 1人當 國民所得도 大幅 增加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經濟規模가 작았던데 比하여 相對的으로 增加率이 높았다는 것이지 經濟規模 自體가 絶對的으로 先進外國과 어깨를 같이할 수 있는 規模로 發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點은

充分히 알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G.N.P가 經常價格으로 1兆 5千億원이었으니 이를 大略 美貨로 換算하면 56億弗 内外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美國에 있어서는 一個企業體에 不過한 G.M.C의 年間賣上高 207億弗과 比較한다든지 「포드」社의 120億弗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經濟規模가 얼마큼 작은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음表와 같이 重要産業施設의 國際比較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企業의 零細한 規模를 알 수 있겠다.

表 1 重要産業施設의 國際比較

業 種 別	單 位	國 際 規 模 (A)	68年 現在의 規模		B/A(%)	
			最 小	最 大	最 小	最 大
시 멘 트	年産千M/T	1,000	400	1,700	40	170
板 유 리	年産千C/S	1,000~1,500	—	900	90~60	—
Nalon 糸	日産 M/T	30	3	10	10	33.3
Acrylic Fiber	〃	30	6	7.5	20	25
P. V. C.	年産千M/T	40	6	15	15	37.5
新 聞 用 紙	〃	60	18	39	30	65
綿 紡	千 錘	60	—	42	—	70
梳 毛 紡	〃	20	—	7.8	—	39

資料 : 韓國産業銀行

다음 非正常的인 流通構造가 市場價格形成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單一生産業者에 依하여 供給되고 있는 板유리의 例를 보아도 이것이 一般生必品보다는 어느 程度 單純한 流通段階를 經由하는 品目인데도 무려 4~5段階의 流通經路를 거쳐야 한다. 또한 工場渡價格을 100으로 보았을때 最終消費者에게는 150.8(「마진」은 50.8%)이라는 價格으로 變貌되어 높은 流通「마진」을 形成하고 있음이 生産性本部의 調査에 依하여 밝혀진바 있다.

이렇듯 韓國經濟의 現實은 國際單位에의 未洽 市場의 狹小, 流通構造의 非合理性 等の 根本的인 經濟與件의 整備를 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現實與件의 整備를 促進함이 없이 모든 經濟活動을 規制하는 立法措置를 取하였을 때 同法制定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것인가에 對하여는 相當한 疑問이 앞서는 것이다.

3

經濟活動을 直接規制하는 立法은 자칫하면 日進月步하는 技術革新과 世界産業技術活用に 큰 支障을 가져올 憂慮가 있을뿐만 아니라 新規製品의 開發, 市場開拓等을 沮害하는 結果를 招來할 公算마저 크다 할것이다.

우리는 近代産業國家를 建設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與件을 具備하고 있지 못하다. 賦存資源이 貧困하고 資本力이 脆弱하며 技術水準도 낮은 形便이 그것을 뜻한다.

이런 狀況에서 經濟成長을 爲하여 우리가 擇하여야 할 「숏컷」(Short Cut)은 오로지 産業技術을 研究 開發하고 先進外國의 高度화된 技術을 移植消化시켜 이를 有用하게 利用함으로써 뒤떨어져 있는 技術水準을 先進諸國에 못지않게 向上革新시킴 뿐이다. 그런데 技術의 革新이란 公式的인 技術導入에 依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만 아니고 어떻게든지 外國의 技術을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商品을 開發하고 이 新技術을 더욱 研磨하여 가는데에서 形成되는 것으로 理解된다.

그러면 同規制法의 制定이 時急을 要하는 技術革新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創意的이고 研究 前進하는 企業이 先進外國의 技術을 導入하여 새로운 商品을 開發함으로써 唯一의 「메이커」가 되었다고 假定할 때 이 企業은 同法으로 因하여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所謂 獨占事業으로 規制를 받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서야 適者生存의 鐵則만이 通用되는 이 冷酷한 國際輸出競争의 渦中에서 어떻게 輸出立國의 至上目標을 達成하도록 新種商品의 開發 및 輸出増大를 成就할 수 있을 것인가 저우기 念慮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外資誘致에의 影響을 勘案하여 立法問題를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指摘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民族資本의 形成이 빈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經濟建設에 所要되는 資源을 確保하기 爲하여 周知하다시피 內資動員에 總力を 기울이는 同時에 可能한限 好條件의 外資를 많이 誘致하려는 것이 現實이다.

그러나 또한 經濟行政의 不合理, 投資環境의 不利等 外資誘致與件의 未備로 時急한 外國人의 直接 乃至 合作投資勸獎政策이 難關을 겪고 있는 것도 看過할 수 없는 現實이다. 이러한 때에 同法의 制定으로 官權干涉의 印象마저 짙게 함은 外國人의 投資意慾을 沮喪시키어 外資誘致에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實際 調査에 依하여 나타난 바를 보더라도 外國人投資家들이 指摘한 外資誘致의 沮害要因 가운데 가장 比重이 큰 要因은 經濟行政節次의 번거로움이었다. 그렇다고 外資誘致의 沮害要因을 排除하기 爲하여 同法適用에서 外國人 投資企業體를 除外한다면 그때는 또다른 深刻한 問題가 擡頭될 것이다.

4

오늘날 世界各國은 國際經濟趨勢가 規模의 經濟임에 立脚하여 單一獨占 乃至 企業合併 等 大

規模化政策을 廣範圍하게 急速度로 推進하고 있으며 또한 各種 特殊法을 制定함으로써 獨占規制를 다룬類似한 法令等을 實質적으로 有名無實화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同法의 制定이 國際經濟潮流에 逆行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찌기 資本主義經濟體制를 確立하여 날로 高度化되는 資本主義의 豊饒를 누리고 있는 美國은 어떤 經濟的 背景에서 어떻게 獨占問題가 다루어졌는가 깊이 살며 參考로 해야 할 것이다.

1840年頃 南北戰爭에 따른 軍需의 刺戟이 工業生産力을 飛躍적으로 增大시켰고 이가 工場規模와 資本力의 巨大化를 促進하였으나 一方 新技術과 새로운 動力源의 利用에 依한 企業의 生産能率의 向上 結果 必然적으로 企業間의 競争이 激化되었다. 따라서 더욱 큰 工場規模와 資本投下가 要請되었으며 激甚한 競争으로부터 回避하자는 要請이 合致되어 1880年代에 企業結合이 擡頭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렇게 해서 成立된 「트러스트」가 大規模化되자 規制氣運이 膨大되어 1890년에는 「서단」法, 1914년에는 「크레이튼」法이 制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年代의 大恐慌期에 接하자 「뉴딜」政策의 一環으로 1933年 全國産業復興法이 制定되어 「서단」法의 適用을 停止하였고 2次大戰 期間에도 軍需産業의 發展과 政府의 投融資로 大企業을 強化하였던 것인데 이런 潮流는 近來의 美行政府에도 繼承되어 「아이젠하워」政府時代에는 『企業의 規模는 獨占禁止法 適用과는 關係가 없다』는 思考가 支配的이었다.

그런데 注目할만한 事實은 最近 「하바드」의 「갈브레이스」教授가 말한바 있는 『新産業社會의 出現』과 더불어 美國內에서는 Anti-trust Law의 存立自體가 오히려 問題視되고 있다는 點이다. 新産業國家라는 著書도 發表한바 있는 그가 美上院 企業特別委員會의 獨占小委에서 行한 演說의 몇 句節을 引用하여 보겠다.

그는 于先 現代 資本主義社會에서 獨占規制法이 果然 어떤 效果를 거둘수 있을 것인가를 疑問視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結局 經濟發展에 對한 우리의 要請을 前提하게될 때 大規模화과 거기에 따른 支配의 傾向이 強해질 수록 企業規模와 市場支配力에 對處해야할 現行 反

「트러스트」의 努力은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反「트러스트」法이 市場支配力을 全然 가지지 않는 企業을 괴롭히면서 實際 行해지고 있는 市場支配力을 合法化시켜 反「트러스트」法이 本來의 立法趣旨를 遂行하고 있다는 印象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安心시키려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所謂 近代化를 指向하고 있는 開發 途上國家들이 初期産業國家로서의 位置에서조차도 獨占規制를 論하는데 對하여 『反「트러스트」法을 갖지않은 美國以外的 産業國家는 대단히 有效한 機能을 發揮하는 反「트러스트」法을 廢止해야만 된다는 意見이 「돈·키호테」的 發想이라고 믿기 어려워 할지 모르나 美國의 反「트러스트」法은 말하자면 民間傳承의 神話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日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太平洋戰爭에서 敗北한 日本 軍閥의 財閥과의 結托을 解體시키기 爲하여 美占領當局에 依하여 마련되었던 獨占規制法은 急速한 戰後復舊와 더불어 新産業社會로의 移行이 促進되자 많은 特別法(電業法, 輕機械輸出振興法 等 12個)을 制定하여 獨占規制法의 適用을 事實上 排除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5

以上에 指摘한 몇가지 理由外에도 獨占規制立法의 不必要性을 舉論할만한 點은 적지 않다. 于先 複雜多岐한 經濟現象이나 行爲를 單一法에 依하여 直接 規制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點과 法制定이 立法技術上 不可能할 것으로 보이는 바同法의 制定은 實效를 期하기 보다 副作用만 深化시키는 結果가 되지않을 까하는 點 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自由資本主義經濟體制를 갖추고 經濟的 民主主義를 俱現하려는 지금 消費者保護, 價格正常化, 企業體質 改善을 통한 國民經濟의 發展을 圖謀하려는 同法의 趣旨는 期必 이루어져야 할 課題일진대 이를 達成할 수 있는 方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諸 經濟與件이 整備되고 企業은 完璧한 經營 合理化를 通하여 生産原價를 낮추며 消費者도 消

費者主義意識이 徹底하여 스스로 權益保護에 앞장설 수 있는 理想的인 狀況이 到來하기 前에라도 이미 政府는 同立法趣旨에서 밝힌 諸般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政策手段을 가지고 있다는 點을 強調하고 싶다.

政府는 이미 金融, 財政, 外換, 租稅, 貿易計劃 等 모든 經濟行政의 調整機能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이 立法趣旨나 規制內容이 類似한 現行法令(物價調節에 關한 臨時措置法, 不正競爭防止法)이 있으므로 行政力을 強化하고 法運用에 妙를 期함으로써 消費者保護와 價格正常化等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經濟運營의 實效를 얻도록 注力한다면 所期의 目的達成은 可期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것이 오히려 實効있는 處事일 것으로 믿어진다.

무릇 一般立法에서는 勿論이려니와 特히 經濟立法에 있어서는 一時的인 輿論이나 感情에 左右되어 立法을 서두르는 것은 올바른 立法姿勢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잘못하면 矯角殺牛의 愚를 犯할 憂慮가 큰 것이다.

그러므로 開放經濟의 利點을 살리고 自由競爭에 依한 自律調整, 需給調節을 期하는 보다 根本的인 解決策을 先行的으로 摸索 講究해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하여 政府는 政府대로 올바른 經濟行政의 運營을 期해야 할 것이고 業界는 業界대로 經營合理化를 통한 「코스트·다운」으로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고 企業體質을 改善하여야 할 것이며 消費者는 消費者대로 經濟的側面에서 民主主義의 主權은 消費者에게 있다는 것을 새삼 깊이 認識하여 消費者保護運動을 活發히 展開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全國民과 政府, 業界가 다같이 國民經濟의 健全하고 安定된 發展을 爲하여 長期的인 眼目에서 漸進的인 改善을 圖謀하여가면 우리의 經濟도 大規模化되어 國際水準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國民所得도 增大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獨占規制를 論하는것은 우리의 經濟가 1人當 國民所得이 적어도 3~5百弗 水準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慎重히 다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再參 強調하면서 近者 舉論되고 있는 獨占規制立法에 對하여 平素에 느끼고 있던 所信을 몇자 밝히는 바이다.